

‘26. 7.

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

김 제 시 의 회

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026-44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6. 7. 13.

제출자: 오승경 의원 외 12인

1. 주 문

- 새만금 인근 시·군 간 내측 매립지 관할권 및 새만금신항 관련 각종 쟁점에 대한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,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새만금사업 및 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은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정부의 상위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김제시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함.
- 그러나, 새만금 내측 매립지와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 간 관할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김제시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김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함.

3. 활동계획

- 새만금 내측 매립지 및 새만금 신항 관련 관할권 확보를 위한 자료 조사·분석
-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김제시 입장 정리 및 대응전략 수립
- 유관기관·전문가 협의 간담회 등 협력체계 구축
- 김제시민 의견 수렴 및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참여 기반 강화
-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김제시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 발굴
- 후속 지원 대책 마련 등

4. 특별위원회 구성

- 명 칭 : 새만금 특별위원회
- 구 성 : 13명(의장 제외)
- 활동기간 :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

5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- 「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(특별위원회), 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
제9조(위원의 선임)

【붙임】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발의 및 찬성의원 명단

연 번	성 명	서명·날인	비 고
1	김능인	김능인	
2	주상현	주상현	
3	김민환	김민환	
4	장경원	장경원	
5	장민우	장민우	
6	홍정애	홍정애	
7	김진수	김진수	
8	오상민	오상민	
9	문순자	문순자	
10	오승경	오승경	
11	최모현	최모현	
12	김영자	김영자	
13	유진수	유진수	
14			